용역표준계약서

용 역 명 : 통합유지보수 및 IT 인프라 업그레이드 계약

계 약 금 액 : 금@@@@@@@@원정 (\@@@@@@ 부가가치세포함)

계약보증금 : 금@@@@@@@원정 (₩@@@@ 부가가치세포함)

하자보증금 : 금@@@@@@원정 (₩@@@@ 부가가치세포함)

지체상금율 : 2.5/1000(지체 시간당 월 유지보수료의 0.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지보수료에서 공제)

계 약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타사항:

사단법인 한국선급과 계약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별첨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기술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서류: 1. 용역계약조건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산출내역서 1부 4. 제안서 1부.

2022년 월 일

주 소: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주 소: 9로 36 발 계 상 호: 상 호:사단법인 한국선급 주 약 대표자 성명: 이 형 철 대표자 성명: (인) 자 자 사업자등록번호: 314-82-03300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070-8799-8606 전화번호:

용 역 내 역 서				
용 역 명	규격, 단위 또는 세부내용	급 액		
통합유지보수 및 IT 인프라 업그레이드 계약	용역 계약조건 참조	일금 원정 ₩ (VAT포함)		

용역계약조건(안)

사단법인 한국선급(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000(이하 "을"이라 한다)는 사단법인 한국선급의 "통합유지보수 및 IT 인프라 업그레이드" 계약을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 ① 본 계약서의 목적은 "갑"과 "을"이 체결한 "통합유지보수 및 IT 인프라 업그레이드"에 관한 "갑"과 "을" 상호의 권리와 의무를 명백히 규정하고 그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는데 있다.
- ② 본 계약의 범위는 붙임.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와 같다.

제 2 조 (계약 내용)

본 계약의 내용은 "갑"의 "통합유지보수 및 IT 인프라 업그레이드"을 수행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용역 내용에 대해서는 별첨 "제안요청서"("갑"제출) 및 "용역제안서" ("을"이 제출한 제안서)에 따른다.

제 3 조 (계약 문서)

계약문서는 용역표준계약서("갑"서식), 용역계약조건("갑"서식), 제안요청서("갑"서식), 용역제안서("을"서식)로 구성되며 각 문서는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또한 계약기간 중 일방이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이 이를 인정한 경우에도 계약 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제 4 조 (계약 금액)

본 계약의 계약금액은 일금000000원정(₩000000, 부가가치세 포함)이며,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모든 제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며, 통합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은 균등 분할하여 매월 일금000000원정(₩000000, 부가가치세 포함)씩 지급한다.

구분	계 약 금 액(원)	비고
통합유지보수		매월 균등 분할하여 지급
IT 인프라 업그레이드		

제 6 조 (유지보수료의 조정)

유지보수기간 중 신규 유지보수 항목이 발생할 경우에는 도입가격의 전산방비의 경우 8%, S/W의 경우 12.5% 기준으로 하고, 제외되는 항목이 발생할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으로 가감하여 지급한다.

제 7 조 (계약 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구분	계 약 기 간	비고
통합유지보수	2023.01.01. ~ 2025.12.31.	
IT 인프라 업그레이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제 8 조 (유지보수료 청구 및 지급)

"을"은 당월의 유지보수료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청구하고 "갑"은 청구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 9 조 (IT 인프라 업그레이드 장비 대금의 청구 및 지급)

- ① "을"이 본 계약에 따라 선금을 청구하면 "갑"은 "을"의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의 2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 ② "을"은 선금 청구 전 선금의 채권확보를 위한 선급금 지급 보증증권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지급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청구일로부터 본 계약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 ③ "을"이 본 계약에 따라 제품의 납품을 완료하고 "갑"의 검사를 합격한 후 계약금액의 나머지 80%를 "갑"에게 청구하며, "갑"은 "을"의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 10 조 (계약이행 보증금)

- ① "을"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을"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을"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에게 귀속된다.

제 11 조 (채권의 양도)

- ① "을"은 본 계약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② "을"이 채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갑"의 서명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전 제2항에 의거하여 "을"의 채권양도 서면승인 요청에 대하여 "갑"이 계약 이행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을 이유로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2 조 (예방정비 및 긴급보수)

- ① 유지보수 활동은 "예방정비"와 "긴급보수"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② 예방정비: "을"은 "갑"의 장비가 항상 양호한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전 장비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긴급보수: "을"은 "갑"이 장애사항을 통보한 후 부산본부의 경우 1시간, 지부 및 임시사무소의 2시간 이내에 현장 도착, 도착 후 8시간 이내에 장애 복구를 완료하여야 하고 48시간 이내에 장애조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갑"은 "을"에게 정상적인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작업 공간, 전기설비 등 적절한 환경을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단, 소프트웨어의 경우원격지원이 가능하다)
- ④ 24시간 이내에 수리, 부품교체 등을 통한 장애 복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을"은 즉시 대체 장비를 무상 설치하여 "갑"의 업무장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부품의 교환 및 청소, 조정 등 성능향상 및 유지를 위한 제반 조치시 동질 또는 동등한 제품 이상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⑤ "을"은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숙련된 유지보수 전담 요원을 확보하고 상 시 연락 가능한 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제반 부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⑥ "을"은 "을"의 요원이 수행한 모든 유지보수 작업의 내용을 "갑"의 담당자에 게 확인을 받고 이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을'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버전 업그레이드 및 기타시스템 관련 정보를 "갑 "에게 제공하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자문에 응하며, 이에 수 반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단, "갑"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갑"과 "을"이 상호 동의한 S/W 업그레이드 설치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 13 조(IT 인프라 업그레이드 장비 납품 및 설치)

- ① "을"은 본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제품을 "갑"의 입회하에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 ② 본 구매는 내자구매 형태로서 제품의 통관, 운송 등 제반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 14 조 (부품의 사용 및 교체)

예방정비 및 유지보수에 필요하여 "을"로부터 제공되는 일체의 부품, 및 부분품은 무상으로 제공되며, 교체시 기존 부품은 "갑"과 "을"의 상호 동의하에 "을"이소유할 수 있다. 단, 제 10 조 각 항에 의한 교체의 경우 기존 부품은 조건없이 "갑"의 소유이다.

제 15 조 (유지보수상의 면책사항)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장애에 대해 "을"은 유지보수 책임을 지지 않으나, "갑"이 "을"에게 수리를 요청한 경우 "을"은 기술적인 지원을 거절할 수 없으며, 이때 장애 발생장비를 보수하기 위하여투입된 부품비 또는 수리비용은 "갑"이 실비로 부담하기로 한다.

- 1. "갑"의 요원에 의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고장
- 2. "을"의 요원 이외의 협의되지 아니한 요원에 의한 정비보수 또는 장비에 대한 개조작업 시도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
- 3. 화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고장이 발생한 경우
- 4. "갑"의 시설물(단전 사항 등)의 환경여건으로 인한 장애

제 16 조 (중도해지)

- ① 본 계약은 "갑"의 일방적인 요청에 의해 중도계약 해지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월의 유지보수 대금은 "갑"의 중도계약 해지 요청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을"에게 지급한다.
- ② "갑"의 요청으로 유지보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지보수장비 발생시 "을"은 대상 장비의 나머지 유지보수 기간만큼 월할 계산 후 감하여 청구한다.

제 17 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갑"과 "을"은 사전에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 18 조 (지체상금)

- ① 통합유지보수에 대한 지체상금은 "을"이 제 12조 3항에서 규정한 보수 시간 내에 보수를 완료하지 못하여 "갑"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지체 시간당 월 유지보수료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월의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기타 "갑"이 인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행하지 못하였으나 "갑"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IT 인프라 업그레이드에 대한 지체상금은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 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서 상계할수 있다. 다만, "을"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의 이행이 지체되었다고인정 될 경우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9 조(하자이행보증금)

- ① 통합유지보수에 대한 하자이행보증금은 없으며, IT 인프라 업그레이드에 대한 하자이행보증금은 2항과 같다.
- ② "을"은 제품의 납품과 검사 완료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3년간 실시하여야 하며 "을"은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납품확인 완료 후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하자이행보 증보험증권으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③ 동 기간동안 유지보수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 20 조 (용역수행자의 신분)

- ① "을"은 본 용역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인원을 참여시켜야 하며, 이들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이 있다.
- ② "을"은 "갑"이 본 용역계약에 참여한 인원에 대하여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없이 해당 인원을 본 계약 수행에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

제 21 조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을"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에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과업수행계획서. 착수계. 투입인력의 이력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계약의 수행 중에도 전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22 조 (휴일 및 야간작업)

"을"은 "갑"의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갑"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 23 조 (계약의 변경)

- ① "갑"과 "을"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상호 협의하여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 날인함으로써 계약금액의 조정 기타 본계약내용에 관련된 계약조건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② "을"은 협력업체의 변동이나 유지보수요원의 교체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한 유지보수 품질의 저하나 원활한 장비의 운영에 저해가 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갑"의 청구가 있을 경우 "을"은이에 대해 배상 하여야 한다.
- ③ 단, IT 인프라 업그레이드에 대한 계약금액은 변경할 수 없다.

제 24 조 (손해배상)

"을"은 계약수행 중 "갑"또는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다만, 책임이 없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5 조 (비밀준수)

- ① "을"은 본 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신원과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어떠한 정보도 계약 전후를 막론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을"은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정보누설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모든 책임이 있으며, 관련하여 "을"이 "갑"에게 지급할 배상금은 "갑"이 산출한다.
- ② 용역수행 전 "을"의 대표는 별지1의 서식을 작성하며, 용역을 수행하는 모든 인원은 별지2의 서식을 작성하여 한국선급 정보기술팀으로 송부한다.

제 26 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수행하지 않거나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 27 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28 조 (계약의 해석)

- ①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② 전 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갑"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위와 같이 용역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서명 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2022. . .

별지 1.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2년 월 일 귀사와 계약 체결한 "통합유지보수 및 IT 인 프라 업그레이드"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 1. 본인은 본 계약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계약 수행 전에 납품수행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계약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에 대한 사업 참여금지는 물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임.

2022년 월 일

소속 :

직위 : 대표이사

성명: (인)

한국선급회장 귀하

별지 2.

보 안 각 서

본인은 한국선급의 "통합유지보수 및 IT 인프라 업그레이드" 계약 이행을 위해 한국선급에 출입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 1. 나는 한국선급에서 출입하는 동안 한국선급에서 정한 출입 및 보안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 2. 나는 한국선급 출입 시 우발적인 비밀누출 방지를 위해 한국선급 정 보보안담당의 허가 없이 비밀자료를 이동시키거나 USB 등 보조기억 매체를 이용하여 반출·입을 하지 않겠습니다.
- 3. 나는 대화 시 계약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한국선급의 비밀을 외부 인이 습득할 수 있는 단서가 될 내용을 제공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2년 월 일

서 약 자 : 주민등록번호:

한 국 선 급 귀 중

(제14호 서식)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서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사단법인 한국선급이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일체의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당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3. 제1~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취소, 계약해제 또는 해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민·형사상 조치를 포함한 사단법인 한국선급의 모든 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 4. 당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당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준수할 것이며 위반시 낙찰자 결정 취소 등 사단법인 한국선급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사단법인 한국선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으며 당사를 배제하는 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사단법인 한국선급 회장 귀하

사단법인 한국선급은 ISO 37001(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기관으로, 모든 협력업체를 존중하며 윤리적이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통해 지속적인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당사의 업무수행(예정)업체인 귀사가 건전한 수준의 윤리 및 청렴 문화를 유지하고 귀사에 적용되는 제반 법령을 숙지 및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자 본 서약서를 징구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당사 윤리경영시스템에 따른 추가 절차가 요구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